##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

최 일 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34폐지)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해나갈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사회주의국가건 설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새 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사상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사회 주의국가건설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치에 대한 로동계급적관점과 립장을 처음으로 확립한것은 로동계급의 사상가들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주요저서들에서 초계급성을 부르짖는 부르죠 아《법치주의》의 부르죠아적성격, 반인민적본질을 예리하게 분석비판하였다. 그들은 부르죠 아《법치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권리》란 다름아닌 자본가계급이 임금로동을 착취하기 위 한 《자유와 권리》이며 그를 구현하여 세워진 자본주의법치국가는 철두철미 부르죠아지의 정 치경제적지배를 전사회적으로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부르죠아독재국가이라는것을 까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법치문제를 자본주의국가에만 한정시켜보았으며 사회주의법치에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레닌은 법치에 대한 맑스주의적관점과 립장을 계승하여 제국주의단계에서 자본주의《법 치》제도의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성격을 낱낱이 폭로비판하였다. 쓰딸린은 사회주의혁명과 건 설실천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위력한 무기인 법을 강 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사상은 제기하였지만 사회주의국가가 법치국 가로 건설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상가들이 사회주의법치에 대하여 론의조차 하지 못한것은 그들이 유물사관의 원리로부터 국가와 법의 본질을 《해당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는 억압기구, 폭력수단》으로만 리해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법치문제를 《법지상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법치주의》적관점에서 본데로부터 법치를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와 대치되는것으로 리해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국가와 법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에는 사회주의국가가 왜 법치국가로 건설되여야 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과 그 건설방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100%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

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은 선행한 로동 계급의 혁명리론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독 창적인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실천에서 지금까지 론의되여오던 사회주의국가가 법치를 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론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으며 《법치주의》와 《인권》의 간판밑에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해오던 제국주의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줄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려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인 사회주의국가와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 은 우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려면 사회주의국가를 인민의 복무자로 끊임없이 강 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 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력사적위업이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때만이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 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국가가 법을 중시하고 국가와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를 철저 히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법을 떠나서 사회주의국가는 인민 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명확한 행동준칙으로 표현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는 중요하게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담보된다.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과 여러 부문법들에는 정치,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명확한 행동준칙의 형식으로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법에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적 및 제도적담보

들도 규제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를 철저히 사회주의법의 요구에 맞게 관리해나갈 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철저히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로 건설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법치국가로 건설되여야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 은 또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성격으로 하여 법치국가로 건설되여야 한다. 하지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정권을 전취하면 곧 사회주의법 치를 실현하는것이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말그대로 사회주의법으로 나라를 관리해나가는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가 법치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문제로부터 국가기관 일군들을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준법의식을 확립하는 문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원만히 마련해줄수 있는 물질문화적조건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마련되였을 때에라야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36(1947)년 2월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한 때로부터 지난 수십년동안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실속있게 갖추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된 첫 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의 온갖 낡은 법률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로인민적인 법률제도를 확립하는 문제로부터시작하여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기 위한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헌법을 립법적기초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법으로 빠짐없이 규제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 여러 분야의 부문법들과 수많은 단행법규들을 제정하여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준법성과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이 밝혀짐으로써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해석적용하는데서 로동계급적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일군들과 공민들속에서 사회주의준법의식을 높이는 문제, 우리 일군들을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서고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된것은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은 사회주의법치를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 은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실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을 토대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려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적인 제도와 엄격한 법질서를 떠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오늘 혁 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는 경제강국건설을 다그 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도 중 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법규률과 법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제기관, 기업소들사이의 계획적련관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있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어기거나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들이 극복되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 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다 높이 발양시키고 공민들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 갖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법을 중시하고 법치를 하여야 온갖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침해로부터 당과 국가,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으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월권행위와 직권람용을 철저히 없애고 인민의 리익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독창 성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 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